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747호)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46호)

2026.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성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입법 배경	3
2. 개정안의 주요내용	4
3. 조문별 검토	5
가.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의 정비	5
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 정비	8
다. 기관 명칭 및 용어의 정비	10
라. 위법한 구속에 대한 조치의 정비	11
※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 주요내용	12

I. 제안경위

1. 황운하의원안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8. 25.

다. 회부연월일 : 2026. 8. 26.

2. 김병주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9. 9.

다. 회부연월일 : 2026.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황운하의원안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2. 김병주의원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2조).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2개의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관련 법률의 후속 정비를 위한 입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은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은 i)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ii)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한 영장의 청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집행만 가능하게 하며, iii)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상호 협력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양 개정안 제16조제3항),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상호 협력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김병주 의원안 제22조). 개정안별 세부 내용은 조문별 검토에서 살펴보기로 함.

[개정안 내용 요약]

개정안	조문	내용	반영사항
황운하 의원안	제16조제3항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의 지휘 문구를 삭제	수사지휘권 폐지 반영
김병주 의원안	제16조제3항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 중 검사의 지휘 문구만 삭제(요구 주체에 검사는 유지)	
	제22조(제목)	“검사의 수사 지휘 등” → “검사와의 협력 등”	
	제22조제2항	검사의 지휘를 받고 명령에 복종 →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음 (사후 지휘 단서 삭제)	
	제22조제3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 “지방공소청장”	공소청 명칭 반영
		구속장소를 “감찰” → “점검”	형사소송법 개정 반영
	제22조제4항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함 →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함	
공통	부칙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시행일

3. 조문별 검토

가.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의 정비(안 제16조제3항)

-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¹⁾(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방산업체 등 민간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경우와 같이, 유출자(점유자)의 PC나 서버를 압수한 이후에도 원본 매체에 기밀이 남아 추가 유출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황운하의원안	김병주의원안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② (생략)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③ ----- ----- ----- -----	③ ----- ----- ----- -----

1) 「형사소송법」은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경사부터 순경까지를 사법경찰리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97조), 군 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245조의10제1항).

현행	황운하의원안	김병주의원안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u>검사(군 검사를 포함한다)</u> 또는 <u>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u> 으로부터 컴퓨터 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u>군</u> -----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u>(군사법경찰관</u> ----- ----- ----- ----- ----- ----- ----- ----- -----.	----- ----- ----- <u>검사(군</u> <u>검사를 포함한다)</u> 또는 <u>사법경찰관(군사법</u> <u>경찰관을 포함한다)</u> ----- ----- ----- ----- ----- ----- ----- ----- -----.

□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그 지휘를 받은”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인 검사(군검사 포함)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되었고,²⁾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상호 협조 의무 조항이 신설된 바 있음.³⁾

2)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6924호, 2021.1.1. 시행)으로 제195조가 신설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었고,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제245조의10에 남아 있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삭제되어 양자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됨.

3)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난 8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⁴⁾

개정안은 최근에 이루어진 이러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 다만,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개정안의 내용이 상이한바, 황운하의원안은 검사를 제외하여 군검사와 사법경찰관만을 주체로 하는 반면, 김병주의원안은 검사를 유지하고 있음.

국방부와 법무부는 상기 조항이 압수 이후 잔존하는 군사기밀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유지 및 재판과정에서 삭제 요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 결정이나 재판 전에 증거물인 원본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4.>

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 「군사기밀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⁵⁾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⁶⁾
- 이렇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법경찰관리⁷⁾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며,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⁸⁾

5)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 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6)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의 “군사안보지원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의미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대통령령 제36526호)에 따라 2026년 7월 31일 해당 부대가 폐지되어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7) 「군사기밀 보호법」 제22조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함.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3항(참고자료 참조)

□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내용을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검사의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며,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변경함(김병주 의원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 이는 검사의 수사 지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지도·조언 요청이라는 협력 수단을 명시한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 상호 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김 병 주 의 원 안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u>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u>	제22조(검사와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u> <u><단서 삭제></u>

다. 기관 명칭 및 용어의 정비(안 제22조제3항)

□ 개정안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점검을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한 사항⁹⁾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김병주
 의원안 제22조제3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김 병 주 의 원 안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① (생 략)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소속 검사에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자세히 신문(訊問) 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와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소청장 ----- ----- ----- ----- -----점검하게 --- 점검하는 ----- ----- -----.

9)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제1항(참고자료 참조)

라. 위법한 구속에 대한 조치의 정비(안 제22조제4항)

- 「군사기밀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제2항은 검사가 위법한 체포·구속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하여, 종전의 송치명령을 석방 조치로 일원화하였음.¹⁰⁾
-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임(김병주의원안 제22조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김병주의원안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① (생략) ④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u>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u>	제22조(검사와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④ ----- ----- ----- <u>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u>

문의처
02)6788-5309

10)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제2항(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 주요내용

현행 조문	개정 조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 <u>지방검찰청 검사장</u>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u>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u>하게 하여야 한다. <u>감찰</u>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u>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u>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u>송치할 것을 명</u>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점검) ① <u>지방공소청장</u>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u>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u>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점검</u>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u>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u>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u>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u>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u>하여야 한다. <u>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u>

현행 조문	개정 조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